



제 433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
조세 감면〉

■ 우재준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5308호)

2026. 3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	3

I. 제안경위

2025년 12월 16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,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306호)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30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

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6조의2(조세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¹⁾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

1)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”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.

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특화구역으로,

현행법 제15조2)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대구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을 운영하고 있음.

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요시설 현황 】

구 분		규 모	주요시설
실증화 시설	실증 플랜트	· 지상 1층 · 연면적 24,951m ²	· (실증플랜트) 5,000m ³ /일 정수 2,000m ³ /일, 하수 1,000m ³ /일 폐수 1,000m ³ /일, 재이용 1,000m ³ /일
	종합관망 시험시설	· 지상 1층 · 연면적 963m ²	· 고가수조, 회수조, 공동구, 종합순환관망
진흥 시설	물융합 연구센터	· 물융합연구동내 · 연면적 11,956m ²	· 임대용 연구시설, 실험실 등
	글로벌 비즈니스센터	· 지상 6층 · 연면적 14,718m ²	· 홍보전시관, 운영기관 사무실, 임대사무실, 정보화센터, 편의시설, 게스트하우스
	워터 캠퍼스	· 지상 4층 · 연면적 5,620m ²	· 도서관, 식당, 강의실, 창업보육실 등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2)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·운영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·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창업·사업화 지원,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·진흥 시설
 2. 물기업의 기술 검증,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
 3. 물기업 집적단지
 4.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- ② (생략)
-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~ ⑥ (생략)

2025년 12월 기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120개이며,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①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, ② 연구·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, ③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등의 지원³⁾을 하고 있음.

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현황 】

구 분	지원 내용
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	· 물산업 관련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개발, 과정운영, 교육 효과성 분석, 홍보 등 · 사업비: 연간 4억원
시설 사용료 감면	· 임대시설 및 실증화시설 30% 감면
해외시장 진출 지원	· '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'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품목(20개) 제조 중소 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현지 사업화 필수 과정 등 지원 · 사업비: 연간 3억 6백만원
자금융자	· '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'에서 대상 선정 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가점(5점) 부여 ※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: 중소·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설치자금(100억원 한도), 성장기반자금(10억원 한도), 오염방지시설자금(300억원 한도) 지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3)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에 입주한 기업, 연구소, 대학, 관계 기관 및 단체 등(이하 “입주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술개발,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주기업등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
 2.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연구·진흥 시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
 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
 4. 제21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
 5.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
 6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한편, 기후변화, 인구증가, 산업고도화로 인해 세계의 물수요는 증가⁴⁾하고 있고,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9,80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3.89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규모는 183억 달러로 미국(2,381억 달러), 중국(1,629억 달러), 일본(893억 달러)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수준⁵⁾임.

또한,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물기업 매출액(50조 9,970억원) 대비 수출액(2조 679억원)은 4.1% 수준⁶⁾이고, 수출 참여 사업체는 1.5%⁷⁾로서 국내 물기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국내 물기업의 93%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⁸⁾로서 기술개발, 사업 확장 및 해외진출 역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임.

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기업 역시 78.3%가 종업원 50명 미만으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4) 기후에너지환경부, “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(2024~2028)”, 2024. 3, p.5
- 1960년 이후 전세계 물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, 2050년까지 현재보다 20~25% 증가할 것으로 예측(세계자원연구소, WRI)

5) 기후에너지환경부, “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(2024~2028)”, 2024. 3, p.6

6) 기후에너지환경부, “2023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”, 2025. 3, p.27

7) 기후에너지환경부, “2023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”, 2025. 3, p.74

8) 기후에너지환경부, “2023년 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”, 2025. 3, p.39

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현황 】

(2025. 12. 31. 기준)

구 분		사업체 수	구성비(%)
종사자 규모	1 ~ 9명	41	34.17
	10 ~ 49명	53	44.17
	50 ~ 99명	16	13.33
	100명 이상	10	8.33
계		120	10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이에, 개정안은 조세 감면을 통해,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며, 영세 물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산업진흥법」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,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⁹⁾하고 있으므로, 특정 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조성한 ‘전략적 집적단지’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조¹⁰⁾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

9)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제14조(세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「식품산업진흥법」

제31조(조세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조11)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정할 수 없고,

개정안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음.

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

10) 「조세특례제한법」

제3조(조세특례의 제한) ① 이 법, 「국세기본법」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.

1. 「소득세법」
2. 「법인세법」
3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4. 「부가가치세법」
5. 「개별소비세법」
6. 「주세법」
7. 「인지세법」
8. 「증권거래세법」
9. 「국세징수법」
10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
11. 「관세법」
1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13. 「임시수입부가세법」
14. 삭제 <2001. 12. 29.>
1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
16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
17. 삭제 <2000. 12. 29.>
18. 「교육세법」
19. 「농어촌특별세법」
20. 삭제 <1999. 5. 24.>
21.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
22. 삭제 <2010. 1. 1.>
23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24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)
25. 「종합부동산세법」

1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3조(지방세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
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,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반면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개정안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(의안번호 15306호)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5307호)」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 납세자의 오해 발생 여지 및 지방세 특례 운영상 혼란 발생 소지는 없으며, ②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.

따라서, 동 개정안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15306호 및 15307호)의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548